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217 호 2020. 2. 6.(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22호[하천 점용허가(변경)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23호[하천 점용허가(변경)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24호[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25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5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57호[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59호[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60호[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2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 22호

하천 점용허가(변경)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하천의 명칭

연암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SK 건설(주)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238-1

3. 점용 목적 및 개요

공사용 가도 및 자재야적장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연암동 152-6, 152-8

나. 면적 : 307㎡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변경 전 : 2012. 11. 26. ~ 2019. 12. 31.

변경 후 : 2012. 11. 26. ~ 2020. 12. 31.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 23호

하천 점용허가(변경)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명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SK 건설(주)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238-1

3. 점용 목적 및 개요

공사용 가도 및 자재야적장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효문동 905-12, 905-14, 906-2

나. 면적 : 744m²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변경 전 : 2012. 7. 2. ~ 2019. 12. 31.

변경 후 : 2012. 7. 2. ~ 2022. 3. 31.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 24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4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고, 같은 법 제8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4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 나. 명 칭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강동골프장) 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
 - 가. 면 적 : 757,220㎡(당초) / 744,368㎡(변경)
 - 나. 규 모
(당초) 골프장(18홀, 755,732㎡), 구역외 도로(대2-19호선, 1,488㎡)
(변경) 골프장(18홀, 742,880㎡), 구역외 도로(대2-19호선, 1,488㎡)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주식회사 새정스타즈 대표자 정상현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달삼로 76번길 21, 603호
5. 사업기간 : 2019. 7. 4. ~ 2021.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5	체육시설	골프장	북구 어물동 산43일대	755,732	감)12,852	742,880	'09.2.19 울고45호	면적 감소

나. 체육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5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감소 : 감 12,852m² - 755,732 → 742,880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반영한 구역경계 조정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 25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매산로 104 외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2. 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1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256	울산광역시 북구	매산로 104	2020-02-06	매산초등학교와 월드메르디앙사이에위 치하여위치예측성확보	2011-08-16
2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지구 13B 7,8L	울산광역시 북구	매산3로 19	2020-02-06	매산로에서분기된도로 로연계성을반영하여도 로명을부여함	2017-05-04
3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211-5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16길 15	2020-02-06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	2018-05-10
4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217-5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14길 4	2020-02-06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	2018-05-10
5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75-8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18길 8	2020-02-06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	2018-05-10
6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886	울산광역시 북구	장등길 128	2020-02-06	기존자연마을인장등마 을에위치하여도로명을 부여함.	2004-08-09
7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500-1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10길 7	2020-02-06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	2018-05-10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157호

울산광역시 복구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복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의거 지역사회 내 통일 역량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의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0. 2. 6.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모집인원 : 4명 이내
2. 접수기간 : 2. 6. ~ 2. 16.(10일간), 마감일 18:00한
3. 접수처 :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소통실 자치행정담당 (☎ 052-241-7265)
4.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및 이메일(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 편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복구청 주민소통실 자치행정담당
 - 이메일 : tom5198@korea.kr
5. 제출서류 : 첨부 신청서 1부
6.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7. 자격요건
 - 가. 평화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 나. 통일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8. 선정결과 : 2020. 2. 27.(목)까지 선정자 개별통지
9.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복구청 주민소통실(241-7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위원 신청서

성 명		사 진
생년월일		
주 소		
직 장 명 (직장주소)		
연 락 처	휴 대 폰 :	자 택 :
E-mail		
최종학력 (전공)		
주요경력		
신청사유 및 활동계획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위원회 위원 관리 및 체납세 확인 조회
- 개인정보 이용 기간 : 임기 만료시까지
- 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빈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위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2020. . .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 - 159호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의 일부개정으로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 부담 없이 이의 신청 등 지방세 불복절차에서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 도입됨에 따라 이를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신설(안 제8조)
- 나.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신설(안 제9조)
- 다.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신설(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참조 : 부과과장, 전화 052-241-7521, 팩스 052-241-7509)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복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 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울산광역시장에게 선정 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장이 선정 대리인을 지정·통보하면 법 제93조의2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신청 결과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 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 - 160호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의 일부개정으로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 부담 없이 이의 신청 등 지방세 불복절차에서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 도입됨에 따라 선정 대리인 신청 및 통지와 관련한 별지서식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선정 대리인 신청 신설(안 제12조)
- 나.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신설(안 제13조)
- 다.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신설(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참조 : 부과과장, 전화 052-241-7521, 팩스 052-41-7509)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복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2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